

2018년 1분기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 신청 공고

조달청에서는 벤처 및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의 전용 상품몰인 '벤처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2018년 1분기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계획을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2일
조달청장

I 지정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이어야 함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 요건을 갖춘 자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6조에 따른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신청 제외 대상(관련 규정 제6조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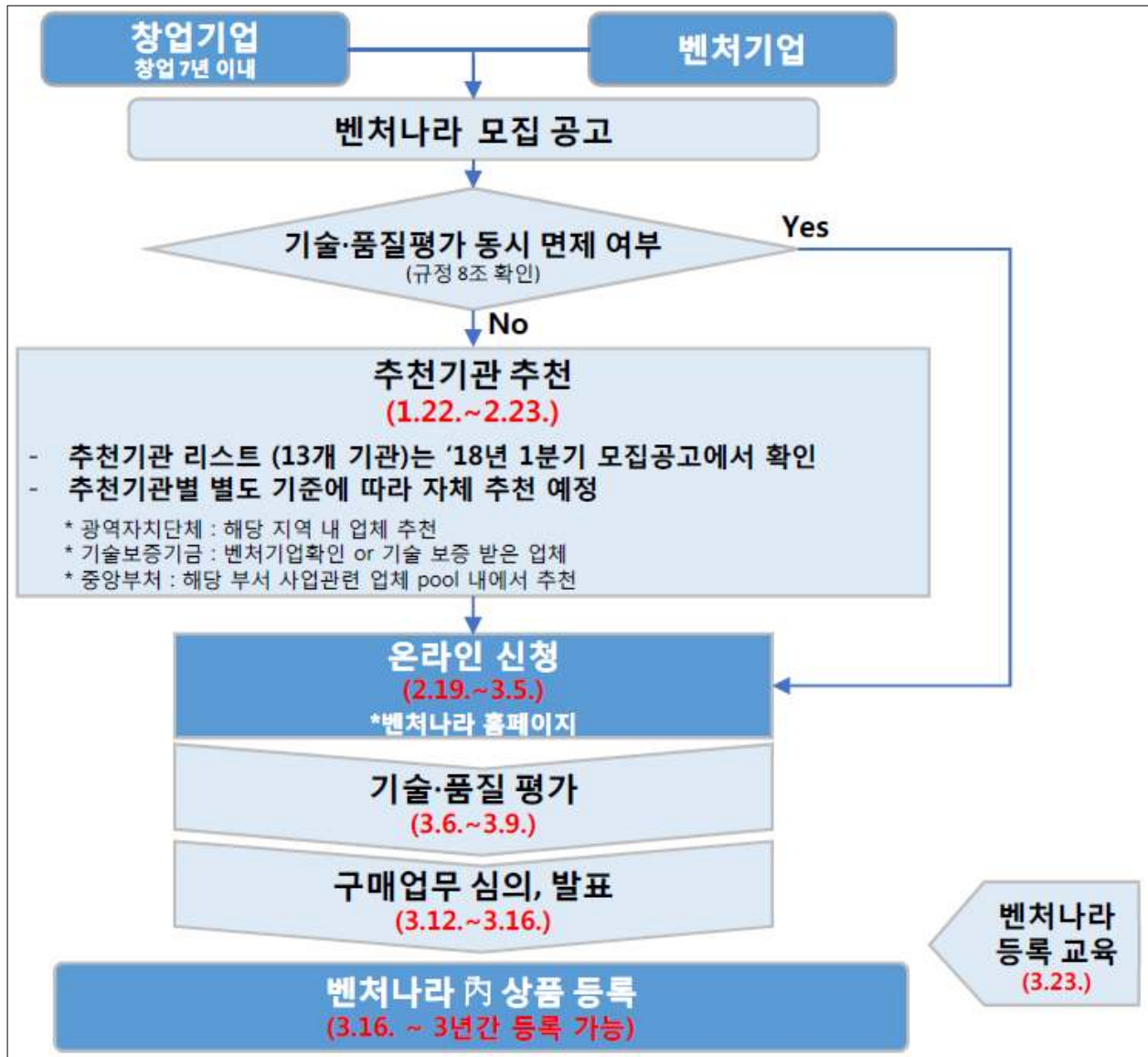
- ▷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
- ▷ 해당 업체가 지정받은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또는 다수공급자 계약 체결한 물품과 동일한 상품이거나 동일한 세부품명 상품
- ▷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 기타 추천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해야 함

① 지정 절차 개요

- (추천기관 후보 상품 모집) 추천기관별 기준에 따라 별도 모집
- (후보 추천) 추천기관이 지정대상 및 지정제외 대상 여부 검토, 기술·품질평가 결과 적격인 상품을 조달청에 추천(별지 제1호 서식)
 - 단, 기술·품질평가 면제 대상*은 추천기관 추천 없이 조달청에 직접 온라인 신청 가능
 -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8조에 따른 성능인증, 신제품, 신기술, 녹색인증, 새싹기업 등(참고 2)
 - * 동 규정 제9조(기술평가 면제) 및 제10조(품질평가 면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 추천기관 사정 등으로 기술·품질평가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천기관 요청에 따라 조달청에서 평가할 수 있음
- (벤처나라 온라인 신청)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 승인 후 또는 기술·품질평가 면제대상인 경우 벤처나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 기술·품질평가 면제(제8조)인 경우 추천기관의 추천 없이 바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조달청 심사) 추천기관에서 추천한 상품, 기술·품질평가 면제대상으로 직접 신청한 상품에 대해 공공기관 수요 적합성 여부 등을 심사
- (지정) 심사 결과 적격인 상품을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지정하고, 지정 결과 발표(벤처나라 공지사항)
 - 단, 지정 이후 벤처나라에 상품 등록을 완료한 이후 지정 효력 발효, 지정증서 발급 및 지정마크 표시 허용
- (등록) 지정된 업체는 추후 조달청 안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물품 목록번호, 벤처나라 상품 등록 등 등록 절차 진행(추후 별도 안내)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절차 흐름도 >



② 2018년 1분기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신청 일정

지정 회차	1분기
추천기관 추천기간*	1.22. ~ 2.23.
벤처나라 온라인신청	2.19. ~ 3.5.
지정 결과 발표	3.16

* 1분기 추천기관 추천은 1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추천기관 자체일정에 따라 진행 예정

③ 지정 신청 방법

- (추천신청) 추천기관별 별도 모집 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추천기관 접수처에 추천기관이 요구하는 신청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
- (벤처나라 온라인 신청) 모든 서류는 파일화하여 벤처나라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시 각 항목별 첨부파일 등록
 - 지정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및 지정 신청서(온라인 신청서식)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당사는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의하여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신청에 대한 자료(증빙자료포함)를 작성·제출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평가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적용기술과 동등이상으로 규격작성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3.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지정이후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에 적용된 기술,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4.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거래의 적절한 이행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근거한 귀 청의 어떠한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01월 19일

서약자(업체명) :

대표 :

조달청장 귀하

<지정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입찰자(명) :	asof	사업자등록번호 :	114E306603
입찰명(명) :		가입신청일 :	
대표자명 :	asof	사업자등록증 :	<input type="button" value="첨가"/> <input type="button" value="삭제"/>
주번번호 :	<input type="text"/>	주소 :	<input type="text"/>
주소 :	<input type="text"/>	나라/지역코드 :	<input type="text"/>
홈페이지 :	<input type="text"/>	상시근로자수 :	<input type="text"/>
담당자 성명 :	<input type="text"/>	담당자 부서 및 직책 :	<input type="text"/>
담당자 전화번호 :	<input type="text"/>	담당자 팩스번호 :	<input type="text"/>
담당자 E-Mail :	<input type="text"/>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	<input type="text"/>
입찰/가입/당첨 구분 (연락) :	<input type="radio"/> 계약 <input type="radio"/> 아니요		
기업규모 :	벤처기업 <input type="radio"/> 미 <input type="radio"/> 아니요 <input type="radio"/> 중소기업 <input type="text"/>		
벤처기업 확인서 :	<input type="button" value="첨가"/> <input type="button" value="삭제"/>		

1) 신청자격은 신청자와 해당 상품의 사업자등록 번호 국공립 회사가 아닙니다.
 2) 신청장 등록화 / 상시근로자 : 1)
 2) 총인원 신청화 / 사업자등록 : 1) 총인원 신청화 / 사업자등록 : 1)
 3) 2) 신청장 등록화 / 사업자등록 : 1)
 3) 2) 신청장 등록화 / 사업자등록 : 1)
 3) 2) 신청장 등록화 / 사업자등록 : 1)
 3) 2) 신청장 등록화 / 사업자등록 : 1)

No.	상물명	상세요달 수	삭제
1		1	<input type="button" value="X"/>

<지정 신청서>

- 상품설명서(별표2 붙임3 서식)
- 사업자등록증
- 벤처기업 확인서(벤처기업인 경우에만 제출)
- 기술 또는 품질 평가 면제 대상인 경우 관련 소명 자료
- 평가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기술·품질 평가 증빙자료
 - * 기술평가 증빙자료 :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 등 기술 관련 자료
 - * 품질평가 증빙자료 : 인증 관련 종합평가 보고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품질평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별지 제3호의 서식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과 적합 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서, 인증마크 부여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권고대상
 - * 국무조정실에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벤처나라를 통해 벤처·창업기업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17.1월)
- 정부조달 입찰·계약에 필수적인 절차(입찰참가자격 등록, 물품목록번호 등록, 벤처나라 이용 방법 등) 관련 교육
 - * 모든 지정 업체에게 1일간 교육 프로그램 제공(조달교육원)
- 정부조달 입찰·계약에 필수적인 절차, 벤처나라 등록 등 상품 거래에 필요한 과정을 조달청 벤처나라 담당직원이 1:1 전담 직원

<참고> ① 추천기관 관련 문의처, ② 평가 면제 대상, ③ 별지 서식 자료

참고1

추천 관련 문의처

구 분	담 당 기 관	연 락 처
추천기관 - 중앙기관 (예산지원, 공동기술개발 등 해당 기관 유관업체만 추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04)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	각 지역 센터 대표번호
추천기관 - 광역자치단체	경기도 창업지원팀	남상혁(031-259-6099)
	전라북도 회계과	김진오(063-280-2328)
	충청북도 전략산업과	서태성(043-220-3443)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김주석(062-613-3862)
	대구광역시 창업진흥과	이영희(053-803-3562)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이정순(042-270-3702)
	부산광역시 창업지원과	이연경(051-888-6754)
	울산광역시 창조경제과	허상용(052-229-6911)
	서울특별시 디지털창업과	정민경(02-2133-4753)
추천기관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송면호(051-606-7349)
직접신청 [기술·품질평가(동시) 면제 상품으로 조달청에 문의]	조달청 구매총괄과	이성언(070-4056-7447) 형훈희(070-4056-7534) 서정범(070-4056-7136) 백주현(070-4056-7217)
제도운영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제도, 벤처나라 운영)	조달청 구매총괄과	이성언(070-4056-7447) 형훈희(070-4056-7534) 서정범(070-4056-7136) 백주현(070-4056-7217)

□ 기술·품질평가 면제 대상(관련규정 제8조)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EPC)을 받은 제품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제품(NEP)으로 인증된 제품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GS)을 받은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5.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녹색기술을 실제 상용화한 녹색인증제품
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증된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7.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운영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인증한 혁신상품인증제품
8. 「조달청 새싹기업 지정·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새싹기업 유망제품
9. 기타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기술·품질 평가를 거쳐 기술·품질 우수 제품으로 인정받은 인증 제품 또는 추천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대상 선정 제품 등으로서 조달청장이 별도의 기술·품질 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 기술평가 면제 대상(관련규정 제9조)

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중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 및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 개발에 성공한 제품
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3.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 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강화를 위해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4.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 중 ‘개발 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한 제품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한 제품
6.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7.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창업 성장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8. 기타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기술 평가를 거쳐 기술 우수 제품으로 인정받은 인증 제품 또는 추천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대상 선정 제품 등으로서 조달 청장이 별도의 기술 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 품질평가 면제 대상(관련규정 제1조)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재활용인증제품(GR)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환경마크)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성능인증(K마크) 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 표시 제품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가품질보증 제품
6.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지능형로봇 품질인증(R마크) 제품
7.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보건제품 품질인증(GH) 제품
8.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뢰성 인증 제품
9. 기타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를 거쳐 품질 또는 성능 우수 제품으로 인정받은 인증 제품 또는 추천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대상 선정 제품 등으로서 조달청장이 별도의 품질 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별지 제1호 서식 (제7조 제3항)]

201○년도 ○분기 기관명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후보 추천서

추천 기관명	추천 사유 1)	추천기업정보							추천상품정보			기술 평가 여부 ⁹⁾	품질 평가 여부 ¹⁾	벤처 기업 ¹¹⁾	창업 기업 ¹²⁾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담당자명 ²⁾	전화 번호 ³⁾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⁴⁾	휴대폰 번호 ⁵⁾	상품명 ⁶⁾	상품분류 ⁷⁾	상품설명 ⁸⁾					

- 1) 추천사유 - 제8조 내지 제1조 각 호에 따라 기술 또는 품질 평가를 면제하는 경우 각 호의 사유를 명시하고, 제7조 제4항에 따라 기술·품질평가를 거쳐 추천하는 경우에는 "기술 우수 제품"으로 명시 (※평가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인증서 등), 평가결과 첨부)
- 2) 담당자명 - 공공조달 판로 진출 관련 담당자가 있는 경우 해당 담당자명 (관련 정보가 없을 경우 대표자명)
- 3) 전화번호 - 공공조달 판로 진출 관련 담당자가 있는 경우 해당 담당자의 전화번호 (관련 정보가 없을 경우 대표번호)
- 4) 이메일주소 - 공공조달 판로 진출 관련 담당자가 있는 경우 해당 담당자의 이메일주소 (관련 정보가 없을 경우 대표 이메일주소)
- 5) 휴대폰번호 - 공공조달 판로 진출 관련 담당자가 있는 경우 해당 담당자의 휴대폰번호 (관련 정보가 없을 경우 대표자의 휴대폰번호)
- 6) 상품명 - 제품명 기재 (신기술 적용제품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성공 제품의 경우 반드시 "기술명"이 아닌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명" 기재)
- 7) 상품분류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군 총 8개 분야* 중 해당 제품 분류
* 디지털/가전, 컴퓨터/주변기기, 자동차/공구/기계, 전문장비, 건강/의료, 교육용품, 시스템/소프트웨어, 기타 아이디어상품
- 8) 상품설명 - 기술 우수성 중심의 상품 설명 자료(10자 이내)
- 9) 기술평가 여부 - 제7조 제4항 또는 제1조에 따라 기술평가를 진행한 경우 O,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술평가 면제 대상은 "면제" 대상이 아니면서 별도의 품질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X
- 1) 품질평가 여부 - 제7조 제4항 또는 제9조에 따라 품질평가를 진행한 경우 O, 제8조 또는 제1조에 따른 품질평가 면제 대상은 "면제", 품질평가 면제 대상이 아니면서 별도의 품질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X
- 11)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확인 (※ 벤처기업 확인증 증빙자료로 첨부)
- 12) 창업기업-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사업자등록증 설립년도 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로 첨부)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비고
1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붙임1)	온라인 신청서식
2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신청서(붙임2)	온라인 신청서식
3	○ 상품설명서(붙임3)	반드시 제출
4	○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제출
5	○ 벤처기업 확인서	벤처기업인 경우 제출
6	○ 기술·품질 평가 면제 관련 소명자료 -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인증에 적용된 특허 등의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포함)	평가면제 대상인 경우 제출
7	○ 기술 평가 증빙자료 -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특허, 실용신안 등 기술 관련 자료 제출
8	○ 품질 평가 증빙자료 -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	반드시 제출
9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 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해당하는 경우 제출
<p><참고> 1분기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시 입찰참가지역 및 직접생산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정상품에 대한 제조등록 또는 OEM생산 등록을 반드시 거쳐 정식식별번호를 받은 업체에 한해 벤처나라 등록이 가능합니다.</p>		

<주>

- 제출 서류는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건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받지 않음.(단, 동 규정 제7조의2 제3항에 따른 보완은 접수 마감일 이후 별도로 정한 기한까지 보완해야 함)

상 품 설 명 서

상품명	
상품의 일반적 용도 및 기능	
어디에 쓰이는 어떠한 물건인지 신청 상품을 간략히 소개(1/4쪽 정도)	
상품 사진	
신청 상품의 형태,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상품의 특징	
타 제품과 구별되는 차별적 특징, 성능을 열거식으로 기재(1/4쪽 정도) ① ② ③	

상품에 적용된 기술 내용

신청 상품에 어떠한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그 기술이 정부 정책방향 및 기술트렌드에 부합하는지,
그 기술이 신청 상품의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 기술이 종래 기술에 비해 어떠한 혁신성이 있는지,
그러한 기술을 도출하고 적용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기술이 적용되어서 어떤 특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결과적으로 일반 제품에 비해 성능 면에서 무엇이 더 좋은지 등을 자유롭게 기재
(1쪽 정도)

일반 제품과 대비되는 차별적 품질·성능

사용자 편의성, 안정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에너지 절약성, 보안성, 환경친화성 등 품질·성능에 대해 자유롭게 기재
단, 차별적 품질·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인증, 시험성적서 등)를 함께 제시(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
(1/2쪽 정도)

신청 모델(규격) 목록

신청 상품과 관련된 모델(규격)이 다수인 경우 신청 모델(규격)목록 제출

※대표 모델과 나머지 모델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지 표로 정리

<예시>

번호	모델명	크기	재질	용량	비고
1	A	1	재질1	용량1	
2	B	50	재질1	용량1	
3	C	70	재질2	용량1	
4	D	10	재질2	용량2	

[별지 제3호 서식 (제7조 제7항)]

품질관리 계획서

본 품질관리 계획서 작성 및 제출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음을 확약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조달청 및 벤처나라 이용기관의 어떠한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서약자(업체명) :

대 표 :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공장			전화번호
자본금			사업자등록번호	
종업원수	총 명	(품질관리 인력: 명)		
공장/생산 시설 현황	※ 주장비, 보조장비, 시험, 검사기기 등			
등록상품 생산실태	직접생산 부분 :			
	외주가공 부분 :		(외주 생산비율: %)	
상 품 명			세부품명	
제품의 내구성 및 수명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형식등록, 안전인증사항 등	※ 공산품 품질관리와 같은 일반적인 허가사항 이외에 신청제품의 생산·판매를 위해 사전 또는 사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제도명, 허가받아야 하는 사항, 현재 상태, 향후 계획 등을 기재하고, 객관적인 관계 자료 첨부			
품질관리	※ 상품에 대한 품질기준, 품질검사 절차, 불합격품에 대한 조치 방법 등			

자재 관리	※ 상품의 자재에 대한 관리 및 검사방법 등
공정 관리	※ 상품 생산 공정별 관리 방법, 관리 주기, 관리 기준, 공정의 자동화 정도 등
검사설비 관리	※ 시험검사 설비 보유 여부, 시험검사 방법, 검사 설비에 대한 교정검사주기 등